

#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년월일 : 2007. 11. 26

발 의 자 : 강성국 위원외 6

##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306호 2007.10.4)의 전부개정에 따라 해당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법령 조문을 개정된 법규정에 맞추어 정비하고, 의회에서 의 증인 등에 대한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현행법령에 맞도록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정코자 하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해당규정의 근거 법규로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개정된 법규정에 맞게 조정함(안 제1조).
- 나. 의회에서 의 증인 등에 대한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현행법령에 맞추어 「공무원여비규정」으로 적용토록 함(안 제4조).

##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 「공무원여비규정」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입법예고 : 생략
- 라. 협의사항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7조의5 제3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44조 제3항”으로 한다.

제3조 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4조 중 “국내여비규정 별표2의 제3호”를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 중 제2호”로 한다.

제5조 중 “숙박료”를 “숙박비”로 한다.

### 부 칙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현행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중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개정안
제명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에서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서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7조의5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의 증인 및 감정인 또는 참고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 시행령」 (이하 “령”이라 한다) 제44조 제3항-----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2.(생략)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1.2.(현행과 같음)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증인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국내여비규정 별표2의 제3호를 준용한다.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중 제2호를 준용한다.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증인등에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등으로서 체제 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 -----숙박비----- -----..

# 공무원여비규정

[일부개정 2007.11.13 대통령령 제20381호]

[별표 2] <개정 2007.11.13> - 시행일 2008. 1. 1 -

## 국내여비지급표(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 임	일 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 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상한액 : 40,000)	20,000

-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 비교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과 중앙인사위원회가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자동차운임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 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별표 2] <개정 2006.1.12> - 현 행 -

국내여비정액표(제10조 내지 제13조 및 제16조제1항관련)

(단위 : 원)

구 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 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 비 (1일당)
특 호	1등급	1등정액	정 액	정 액	20,000	실비	25,000
제1호	1등급	2등정액	정 액	정 액	20,000	46,000	25,000
제2호	1등급	2등정액	정 액	정 액	20,000	46,000	25,000
제3호	2등급	2등정액	정 액	정 액	20,000	30,000	20,000
제4호	2등급	2등정액	정 액	정 액	20,000	30,000	20,000

비고

1. 자동차운임의 정액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2. 철도운임란 중 1등급은 특실 정액, 2등급은 일반실 정액을 말하며, 당해 철도운임란의 등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3. 수로여행시 페리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특호 및 제1호 해당자에 대하여는 특등, 그 밖의 자에 대하여는 1등운임을 지급하되, 운임의 정액은 해양수산부 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4. 운임은 정액으로 지급하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5. 숙박비란의 실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한 금액으로 한다.